



교육과학기술부
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



한국연구재단
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

2010년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
「학제간 융합연구지원」 신청요강

2010. 1

교육과학기술부
한국연구재단



주요사항 신규대비표

구분	2009년	2010년	비고
지원 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예산 : 2,000백만원 - 씨앗형 : 1,300백만원(20과제 내외) - 새싹형 : 600백만원(3센터 내외) - 문진포럼 운영 지정과제 : 100백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예산 : 3,000백만원 - 씨앗형 : 1,000백만원(14과제 내외) - 새싹형 : 1,900백만원(신규 8센터 내외 계속 2센터) - 문진포럼 운영 지정과제 : 100백만원 	
지원 분야	인문사회(복합.예술.체육 등)와 이공계(자연과학, 공학, 의학, 농수해양)의 융합연구분야	좌동	
지원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씨앗형사업 : 연구팀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새싹형사업 : 사업단(센터)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	좌동	
지원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씨앗형사업 : 10개월 (10개월 기획사업 평가 후 새싹형 사업 진입 가능) 새싹형사업 : 사업단(센터)당 3년 지원 (2년 추가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씨앗형사업 : 1년 새싹형사업 : 좌동 	씨앗형 기간연장
연구진 구성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(연구팀장 또는 사업단(센터)장)를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 (동일 분야 전공자 비율이 70%를 초과하지 못함) 	좌동	
심사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씨앗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건심사→전문가 집중심사(온라인 전문심사, 패널 집중심사)→종합심사 새싹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건심사→전문가 집중심사(온라인 전문심사, 패널 집중심사)→면담심사→종합심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씨앗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건심사→전공(패널)심사→종합심사 새싹형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건심사→전공(패널)심사→면담심사→종합심사 	온라인 심사 제외
추진 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자 신청 : 2009. 3. 17(화) 09:00 ~ 3. 24(화) 18:00 기관 확인 : 2009. 3. 25(수) 09:00 ~ 3. 26(목) 18:00 연구 개시일 : 2009. 5. 1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자 신청 : 2010.5.10.(월) ~ 5.17(월) 18:00 기관 확인 : 2010.5.18(화) ~ 5.19(수) 18:00 연구 개시일 : 2010. 9. 1 	사업개편에 따른 일정조정
기타 (사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싹형 사업은 3년차에 단계평가를 수행하여 강제탈락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동 새싹형은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급 연구성과 발표에 대한 책무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발표회 참여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 - 포럼 세미나, 컴퍼런스, 국내외 학술대회 등 연 1회 주관 개최(새싹형:의무, 씨앗형:장려) 	성과관리 강화



차 례

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	
■ 사업목적	1
■ 지원방향	1
II. 지원 내용	
■ 지원예산	1
■ 지원대상	1
■ 지원유형	2
■ 지원형태	2
■ 지원규모	2
III. 신청방법	
■ 신청자격	3
■ 신청기간	4
■ 신청절차	5
■ 신청 및 참여 제한	5
IV. 심사 및 선정	
■ 심사단계	6
■ 심사절차 및 내용	7
■ 선정확정 및 협약	7
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	
■ 연구비 지급	8
■ 간접비 지급방안	8
VI. 연구과제 사후관리	
■ 연차평가	9
■ 단계평가	10
■ 연구결과 보고	10
■ 연구결과물 제출	11
■ 연구결과보고 및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	12
■ 연구성과관리	13
VII. 기타사항	
■ 기타 참고사항	13
[붙임 1] 심사항목 및 배점	15
[붙임 2]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	18
[붙임 3]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양식	19

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

● 사업목적

- 과학적 합리성, 인문적 통찰력, 사회적 상상력, 예술적 창조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
- 개방형 공동연구 토대 구축 및 근거에 기반한 주요이슈의 도출·분석·해결
-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여 중장기적 학제간 전문인력 육성

● 지원방향

- 학제간 융합의 저변확대를 위해 씨앗형(기획) 중심의 사업 추진
- 씨앗형 사업은 1년간 기획사업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새싹형 사업으로 진입 추진
- 새싹형 사업은 사전 기획없이 최대 5년간 본 사업 추진

II. 지원 내용

● 지원예산

- 지원비 : 총 3,000백만원
 - 씨앗형사업(신규) : 1,000백만원 (14 과제 내외)
 - 새싹형사업 : 1,900백만원 (신규 8 센터 내외, 계속 2 센터)
 - 문진포럼 운영 지정과제 : 100백만원

● 지원대상

- 지원분야 : 인문사회(복합·예술·체육 등 포함)와 이공계(자연공학·공학·의약학·농수해양)의 융합분야
- 신청자격
 -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기관 소속연구자로 연구팀 및 사업단(센터)을 구성하여 신청

● 지원유형

- 씨앗형 사업 : 연구팀 단위 (자유공모)
- 새싹형 사업 : 사업단(센터) 단위 (자유공모 및 지정과제)

세부 트랙명	지원유형	지원규모	지원기간	비고
씨앗형	공동연구	연 70백만원 이내(간접비 포함)	1년	9.1 연구개시
새싹형		연 200백만원 이내(간접비 포함)	3+2년	

- 문진포럼 운영(지정과제)
 - 사회적 이슈를 발굴, 연구하여 합리적 사회기반 확보에 기여
 - 융합연구의 롤 모델 제시로 타 사업팀에 노하우 전수
 - 공개 포럼 개최 및 신문 기고로 대국민 홍보 추진
 -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 활동 수행

● 지원형태

- 씨앗형 사업 : 연구팀장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6인이상으로 팀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
- 새싹형 사업 : 사업단(센터)장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6인 이상

● 지원규모

- 지원 규모
 - 씨앗형사업 : 연구팀당 최대 70백만원 이내(간접비 포함)
 - 새싹형사업 : 사업단(센터)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(간접비 포함)
- 지원 기간
 - 씨앗형사업 : 1년(기획사업 평가후 새싹형 사업 진입 가능)
 - 새싹형사업 : 사업단(센터)당 3년 지원 (2년 추가 가능)

Ⅲ. 신청방법

● 신청자격

- 『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기관 소속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※ 20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, SCI급 국제학술지(SCI&SCIE, SSCI, A&HCI, SCOPUS) 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등의 연구 실적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자

구 분		참여자격	비고
연구책임자	씨앗형 연구팀장	- 연구업적 3편 이상	
	새싹형 사업단(센터)장	- 연구업적 3편 이상	
참여연구원		- 연구업적 1편 이상	씨앗형, 새싹형 공통

;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,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

; 단,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

※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

제 5 조 (지급대상)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외의 대학(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)또는 그 소속교원
2.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·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
3. 「대한민국학술원법」 제13조 및 「대한민국예술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·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·예술가 또는 그 단체
4. 대학의 시간강사
5.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6.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

○ 연구진 구성조건

- 1) 연구책임자(팀장 또는 사업단(센터)장)는 신청기관(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)에 교수 및 선임(연구원)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, 동 지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재직 가능한자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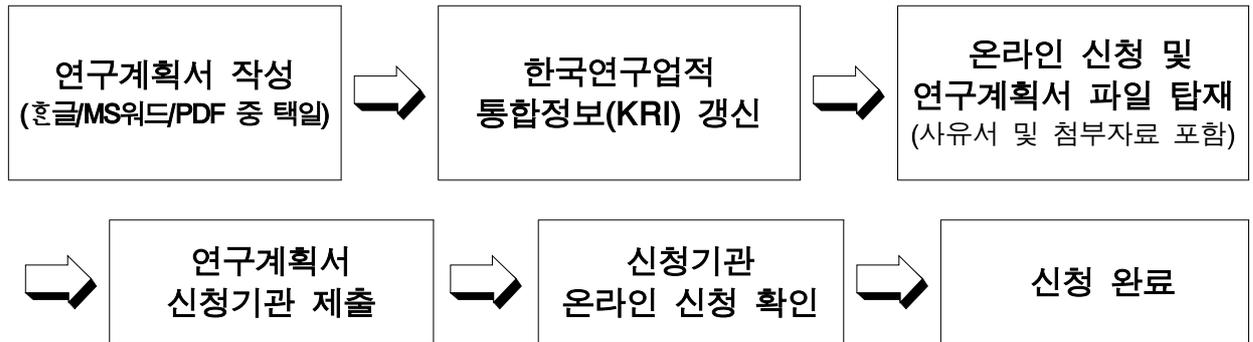
- 2) 참여연구원은 대학에 전임 및 시간강사 이상 또는 신청기관(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)에 선임(연구원)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함
- 3)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성이 인문사회(예술·체육포함)와 이공계(자연과학, 공학, 의약학, 농수해양)중 어느 한 분야 전공자 비율 70% 이상 금지
- 4)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(Full-Time)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
 -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,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
 -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(퇴직금 포함)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%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(기관지원분)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
 - 전임연구인력이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6명 이상의 구성기준에서 제외함
 - 전임연구인력 1인당 4.95m²(1.5평)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
- 5) 연구보조원으로 학사과정생 및 학사급연구원,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연구원, 박사과정 등이 참여가능함
 - ※ 연구책임자 책임 아래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,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(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)

● 신청기간

- 연구자 신청 : 2010. 5. 10(월) ~ 5. 17(월), 18:00까지
- 기관 확인 : 2010. 5. 18(화) ~ 5. 19(수), 18:00까지

●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● 신청절차 (온라인 신청절차)



※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「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」에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정보(연구업적 등)를 입력, 수정하여야 함(신청 완료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.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개인 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)

※ 세부 온라인 신청요령은 온라인 신청 1개월전 별도 안내 예정

●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

-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(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)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해 5년간 참여 제한
 - ※ 2009년 이전 선정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를 제한
- 대학·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 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』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(범위 및 기간 등)에 따라 신청제한

※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.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

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

-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-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,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
 -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, 공동 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 - ☞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,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(인문사회 및 이공분야) 지원과제와 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0. 12.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1. 1. 1.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,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, 개인연구(기초연구-우수논문 사후지원), 기반연구(사회과학지정주제-연구자 네트워크), 기반연구(G20국가 모니터링단 시범사업),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, 인문학진흥사업 중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,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 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(지원기간)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

*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. 즉, 신청한 과제(연구자)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

*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
*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

IV. 심사 및 선정

● 심사단계(씨앗형)

심사구분	심사구분	심사내용	비고
1단계	요건심사	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	한국연구재단
2단계	전공심사 (패널심사)	연구계획서 심사 - 필요성, 팀 구성의 우수성, 사회문제 해결 등 평가 - 연구수행 방법, 추진전략, 책임자의 핵심역량 평가	전공심사단
3단계	종합심사	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,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	종합심사단

※ 심사항목 및 배점 : 붙임 1-1 참조

● 심사단계(새싹형)

심사구분	심사구분	심사내용	비고
1단계	요건심사	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	한국연구재단
2단계	전공심사	패널심사	연구계획서 심사 - 필요성, 팀 구성의 우수성, 사회문제 해결 등 평가 - 연구수행 방법, 추진전략, 책임자의 핵심역량 평가
		면담심사	
3단계	종합심사	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,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	종합심사단

※ 심사항목 및 배점 : 붙임 1-2 참조

● 심사절차 및 내용

가) 요건심사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

나) 전공심사

- 심사자 주관 : 전공심사단
- 심사방법
 - 패널심사 :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
 - 면담심사 : 패널심사에서의 의문사항 확인,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

다) 종합심사

- 심사 주관 : 종합심사단
- 심사 내용 :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(창의·도전·소외 분야 과제 선정 포함),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
 - ※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

● 선정 및 협약체결

- 예비선정 :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등을 검증
- 최종선정 : 예비선정 기간 중 검증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을 확정
- 협약체결 : 한국연구재단(이사장), 연구자, 주관연구기관(장)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

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● 연구비 지급

- 지급방법 : 연구책임자 소속기관(주관연구기관)장을 경유하여 지급
- 지급시기 :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및 간접비 지급
- 연구비 관리 : 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(주관연구기관)이 중앙관리함

● 간접비 지급